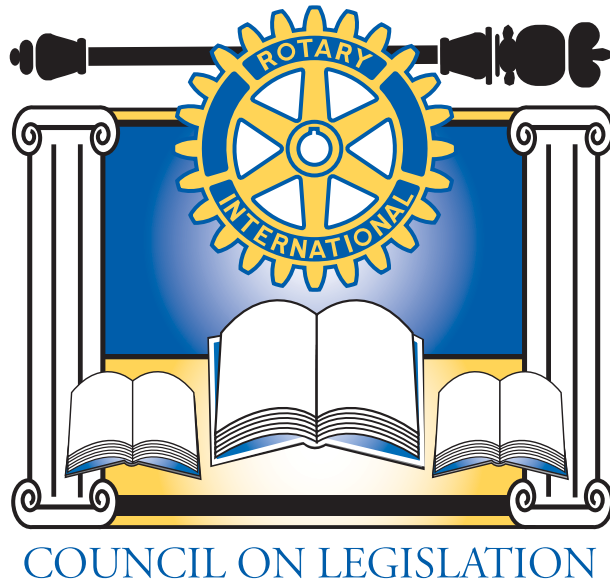


2010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핸드북



서론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은 귀하의 로타리 경력 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직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규정심의회 활동은 전세계 로타리클럽과 지구, RIBI 심의회, RI 이사회 등이 제안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규정심의회 자체적으로 제안한) 입법안들을 하나 하나씩 토의하고 표결해야 하는 매우 고된 작업으로 1 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규정심의회는 매 3 년마다 (4 월, 5 월 또는 6 월에)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2010 규정심의회는 2010 년 4 월 25-30 일, 시카고 메리어트 다운타운 매그니피센트 마일(Chicago Marriott Downtown Magnificent Mile)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의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를 비롯해 5 개 국어로 동시 통역되는 매우 흥미로운 회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 규정심의회는 2010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일을 비롯(2008 년 12 월 31 일까지 RI 세계본부에 도착되어야 함), 수정안 제출 마감일, ‘하자 있는’ 입법안에 대한 정의, 지구당 제안할 수 있는 입법안의 수 등 입법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들은 본 책자나 “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심의회 참가자는 투표권이 있는 지구 대의원들과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로 구분됩니다.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규정심의회 의장
- ✓ 규정심의회 부의장
- ✓ 의사진행법 전문가
- ✓ 정관 및 세칙 위원회
- ✓ RI 회장
- ✓ RI 차기 회장
- ✓ RI 이사회
- ✓ 사무총장
- ✓ 역대 RI 회장
- ✓ 재단 관리위원회 대표
- ✓ 무임소 의원

이외에도 참관인, 사찰, 그리고 자격심사 위원(지구 대의원으로 구성) 등 모두 700 여명이나 됩니다.

본 핸드북은 규정심의회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 대의원의 임무 및 책임 사항들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핸드북에 없는 내용에 대한 질문은 RI 규정심의회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Council Services
Rotary International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linois 60201
USA

전화: (847) 866-3466 또는 (847) 866-3302

팩스: (847) 866-2123 또는 (847) 866-5507

councilservices@rotary.org

본 부서는 최선을 다해 귀하의 규정심의회 활동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대의원의 의무

RI 세칙, 제 8.030.항은 규정심의회 대의원의 임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8.030.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클럽의 심의회 입법안 제안 준비를 지원;
- (나) 지구대회 또는 기타 지구 회합에서 제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토론;
- (다) 지구 로타리안들의 의견 파악;
- (라) 규정심의회에 제출된 모든 입법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규정심의회에 효과적으로 전달;
- (마) RI의 공정한 입법 제정자로 활동;
- (바) 규정심의회전 기간 동안 회합에 참석;
- (사) 규정심의회 폐회 후, 규정심의회 심의 내용을 지구 내 클럽들에게 보고;
- (아) 차기 심의회에 제안할 지구 클럽들의 입법안 준비를 지원.

규정심의회는 매 3 년마다 개최되므로 관련 업무, 즉 규정심의회 대의원의 업무 일정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제 1 차 연도 (2007-08)	대의원 선출 연도
제 2 차 연도 (2008-09)	입법안 제출 (제출마감일: 2008 년 12 월 31 일)
제 3 차 연도 (2009-10)	규정심의회 참가 준비 (2010 년 4 월 25-30 일 예정)

2010 규정심의회 일정

2008년 6월 30일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 RI에 보고
2008년 12월 31일	2010 규정심의회 입법안 세계본부 제출 마감일
2009년 3월 31일	입법안 수정안 세계본부 제출 마감일
2009년 8-12월	존 연수회에서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교육 실시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은 반드시 참석해야 함)
2009년 9월 30일	입법안 책자 출간
2010년 2월 25일	입법안에 대한 클럽/지구의 ‘찬성 및 반대 의견’ 세계본부 제출 마감일
2010년 4월 25-30일	2010 규정심의회 개최 예정일,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제 1 차 및 2 차 연도

입법안은 제출 마감일(2008년 12월 31일)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제 2 차 연도 상반기 12월 31일이 임박해서야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들은 소속 클럽/지구의 입법안 작성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I 이사회는 클럽/지구의 입법안 작성과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심의회 참가 경험이 있는 로타리안들로 규정심의회 지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지구 대의원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됨).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 대의원은 RI 세칙 제 7 조와 RI의 출판물 ‘입법안 제안 방법’, 그리고 2007 절차 요람 제 10장 등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RI 웹사이트(rotary.org)의 규정심의회 관련 페이지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법안 작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관 문서들과 입법안 작성 표준 양식을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 규정심의회는 2010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일을 비롯, 수정안 제출 마감일, ‘하자 있는’ 입법안에 대한 정의, 지구당 제안할 수 있는 입법안의 수 등 입법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들이 본 책자나 “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 사항”에 설명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의 입법안들은 모두 지구대회(RIBI 인 경우 지구 심의회) 심의 과정을 통해 (만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구 우편 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대회에서 승인을 얻은 클럽의 입법안만이 심의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지구대회(RIBI 인 경우 지구 심의회)에서도 지구 입법안을 채택, 규정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I 세칙은 지구의 입법안(클럽들의 입법안 포함)의 수를 최고 5 개까지 제한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클럽/지구가 어떤 입법안이라도 제안할 수 있지만, 지구에서 일차적으로 선별된 꼭 필요한 입법안만이 규정심의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최근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다루어야 할 입법안의 수가 너무 많아 효과적으로 토론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2010 규정심의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 지구들 가장 중요한 입법안만을 선별하여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구 입법안을 작성, 제안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제안할 입법안이 현지, 즉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또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 ✓ 제안할 입법안이 순전히 제안자의 개인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전체 로타리 세계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 ✓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가?
- ✓ 규정심의회 입법안이 아니라 RI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Memorials to the Board)로 대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
- ✓ 제안할 입법안이 RI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의 재량에 속하는 행정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규정심의회가 원래의 목적대로 로타리 세계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들만을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전세계 모든 지구와 대의원들의 협조가 요망됩니다.

2010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일은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클럽/지구의 입법안들은 지구총재가 서명한 ‘지구 심의 및 승인 확인서’와 함께 RI 세계본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자정 이후에 도착한 입법안들은 2010 규정심의회에 제안된 입법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없음을 주지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지구대회나 지구 우편투표에 의해 지구 심의 과정을 통과한 입법안들은 지구대회가 끝난 후 혹은 우편투표인 경우 지구총재가 정한 우표용지 반송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세계본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 2 차 연도

제 2 차 연도에는 RI 정관 및 세척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습니다. RI 정관 및 세척 위원회는 3명의 위원과 RI 연락 이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들의 임기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RI 회장이 매년 위원 1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심의회가 개최되는 연도에는 직전 위원이 위원회의 추가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및 세척 위원회는 규정심의회가 개최되기 약 4-5 개월 전부터 규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회합을 갖습니다. 정관 및 세척 위원회 위원들과 규정심의회 의장 및 부회장 등이 규정심의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멤버들입니다.

RI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심의회에 제출된 모든 입법안들을 검토합니다.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 상정 여부를 RI 이사회에 추천하는 일은 물론 내용에 결함이 있거나 하자가 있어 더 보강해야 할 입법안들을 선별해 내는 일이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업무입니다. 동 위원회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입법안을 제안한 제안자나 대표자에게 문제점들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귀 지구의 입법안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를 받게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하자있는 입법안으로 또는 ‘로타리 프로그램의 범주를 벗어난 입법안’으로 최종 판명되어 심의회에 상정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RI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입법안에 첨가할 입법안 ‘취지 및 효과’를 검토하며, RI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통해 입법안이 RI 재정에 미칠 영향, 즉 ‘재정상 영향’을 작성합니다.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유사한 입법안들을 제안한 지구들에게 절충안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같은 주제에 대해 비슷비슷한 입법안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입법안으로 통합시키는 작업도 동 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입법안들을 피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안 하나를 심도있게 다루게 되므로 또한 제안자 모두가 이를 지지하게 되므로, 절충안 제안이 각각의 원래 입법안보다 호소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은 수의 입법안을 다룰 때 규정심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절충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면 이를 수락해 줄 것을 강력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입법안 제안자가 자신의 입법안을 수정 제안하길 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안자가 귀하에게 연락할 지도 모릅니다. 입법안 수정 제안은 200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날 이후에는 규정심의회에서의 서면 제출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차 연도

제 3 차 연도는 규정심의회가 소집되는 연도로서,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안된 입법안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입법안

9 월이나 10 월에 규정심의회 입법안 책자(한국어 번역본)가 귀하께 우송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규정심의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이 책자에 실린 입법안들을 숙독해야 합니다. RI 웹사이트, 규정심의회 섹션에 ‘포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곳을 방문하여 규정심의회 입법안에 대해 전세계 지구 대의원들과 토론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필요할 경우, 규정심의회 입법안 책자 제 2 권이 규정심의회 개최 직전에 대의원들에게 우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하자’있다고 판명된 입법안들에 대한 개정안들이 수록되게 됩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규정심의회 입법안 책자 제 2 권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도 우송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현지에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규정심의회 개최 직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입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표명(Statements of Support or Opposition)’도 대의원들에게 우송될 것입니다. 이 의견 표명서는 클럽, 지구대회, RIBI 전체 심의회, 또는 RI 이사회 등이 특정 입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보통 사용하는 사무용지의 편면 1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2 개월 전(2010 년 2 월 25 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입법안을 지지하는 어떠한 자료들도 규정심의회에서 배포될 수 없으므로, 제출한 입법안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정보 또는 찬반 의견들을 표명할길 원하는 클럽과 지구들은 입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표명’ 제출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규정심의회 대의원인 귀하께서는 입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표명서’를 비롯, 규정심의회와 관련하여 우송되는 모든 자료들을 숙독해야 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로타리 존 연수회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들은 심의회가 개최되는 연도의 존 연수회에 반드시 참석, 지구 대의원의 역할에 대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회가 개최되는 연도의 모든 존 연수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심의회 준비 세션’을 2 회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규정심의회에 대한 개요와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비디오 상영, 모의 심의회 그리고 역대 대의원들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되는 대의원 연수 세션.
2. 규정심의회에 제안된 입법안들에 대해 로타리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청취하기 위한 세션. RI 이사회는 로타리안들의 자유 토론을 위해 제안된 입법안들 가운데 몇 개를 선정하여 존 연수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대의원들은 존 연수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지만, RI 는 존 연수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구에 따라 존 연수회 참가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지구들도 있습니다.

심의회에서의 대의원 역할

규정심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진행 상황을 담은 비디오가 귀하께 우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존 연수회의 ‘규정심의회 준비’ 시간을 통해서도 규정심의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심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2007 규정심의회에서 채택한 회의 절차 규칙(2007 절차 요람, 제 18 장)을 숙지해 주십시오. 2010

규정심의회에 제안될 회의 절차 규칙도 대의원들에게 우송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0 규정심의회가 제안된 이 회의 절차 규칙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해 주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정심의회는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일요일에 심의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의원들은 모두 2010 규정심의회가 개최될 시카고 메리어트 다운타운 매그티피션트 마일(Chicago Marriott Downtown Magnificent Mile) 호텔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한 아침과 점심 식사는 호텔에서 함께 하며, 저녁 식사는 각자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규정심의회는 호텔의 가장 큰 볼룸에서 개최되며, 대의원들은 전자 투표기로 표결하게 됩니다. 대의원 모두에게 휴대폰이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원하시는 언어로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되는 토의 상황을 알아듣고 또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족수의 대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규정심의회가 정식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규정심의회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자격 심사 위원회 부스를 방문하여 귀 지구의 총재가 서명한 **지구 대의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야 등록 부스에서 규정심의회 자료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규정심의회 입법안 심의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점심 식사 시간을 비롯해 오전, 오후에 각 1 회씩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 규정심의회 경우 심의회 등록 시, ‘규정심의회 입법안 바인더’가 지구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규정심의회 입법안 바인더는 규정심의회 입법안 책자와는 달리 입법안들을 심의 순서(Order of Consideration)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9월/10월에 배포될 2010 규정심의회 입법안 책자는 심의 순서대로 입법안들이 수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 및 세칙 위원회가 제출된 모든 입법안들을 검토할 때까지 입법안 책자 2 권을 출간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정심의회 입법안 책자 1 권 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법안 바인더’를 만들지 않을 계획이므로, 대의원들은 우송된 입법안 책자들을 반드시 지참하고 규정심의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해 주십시오.

지구대의원들은 지구 또는 지구 클럽들이 제안한 입법안들을 심의회에 제안해야 하므로, 차례가 오면 즉시 심의회에 본안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안동의를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2007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회의 절차 규칙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제 0000 지구의 아무개 입니다. 저는 _____(사용할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규정심의회 입법안 10-_____ (제정안 혹은 결의안의

번호)을/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My name is _____. I will be speaking _____ (indicate language). I am from _____ (district number). I move 10- _____ (indicate enactment or resolution number).”]

입법안에 대한 본안동의 이외에도 의사진행 동의나 찬반 토론에 대해 발언하실 때도 있습니다.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색상의 마이크(즉, 찬성 발언일 경우 녹색 마이크; 반대 발언일 경우 빨간색 마이크, 동의 제기일 경우 노란색 마이크)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회 의장이 발언을 허락하면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본인은 제 0000 지구의 안무개 입니다. 저는 _____(사용할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규정심의회 입법안 10-_____ (제정안 혹은 결의안의 번호)을/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My name is _____. I will be speaking _____ (indicate language). I am from _____ (district number).”]

본인을 소개하신 후, 발언하는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_____ 동의합니다.
[“I move to _____ (indicate motion).”]
“저는 _____ 때문에 본 입법안을 찬성합니다.”
[“I am speaking in favor of this legislation because _____.”]
“저는 _____ 때문에 본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I am speaking against this legislation because _____.”]

발언권을 먼저 얻은 대의원이 귀하와 같은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경우, 같은 의견을 다시 피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대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양보하고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이렇게 양보할 경우, 제안된 입법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들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심의회는 귀하의 로타리 커리어 중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지구 대의원들은 전세계 여러 국가의 로타리안들로부터 우리의 단체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접할 수 있으며 또한 RI 이사들과 전 RI 회장들을 같은 장소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미래와 관련하여 전세계 로타리 가족이 함께하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대의원들의 임무는 힘들지만 보람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경험하시면, 왜 전 대의원들이 다시 대의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2013 규정심의회 - 제 1 차 연도

규정심의회가 끝나면 심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입법안들을 정리한 규정심의회 결의보고서와 수정된 정관 문서들을 지구 대의원들께 송부해 드립니다. 결의보고서에는 클럽에서 사용할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심의회에서 통과된 중요한 내용들이 RI 웹사이트에 게재되겠지만, 지구 대의원인 귀하께서는 지구 클럽들에게 규정심의회 결과를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RI 이사회는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결의안들과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들을 지구총재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

규정심의회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자원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 ✓ RI 정관, 제 10 조 (“규정심의회”)
- ✓ RI 세칙, 제 7 조 (“입법 절차”)
- ✓ RI 세칙, 제 8 조 (“규정심의회”)
- ✓ 2007 절차 요람, 제 10 장 (“규정심의회”)
- ✓ 2007 절차 요람, 제 18 장 (“회의 절차 규칙”)
- ✓ www.rotary.org 의 규정심의회 페이지
- ✓ “입법안 제안 방법” (www.rotary.org 의 규정심의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규정심의회 포럼(www.rotary.org 의 규정심의회 페이지 참조)

규정심의회 대의원 체크리스트

제 1 차 연도

- ✓ 귀 지구의 총재와 본인이 서명한 대의원 증명서를 잘 보관한다. 대의원 증명서는 자격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신임장이다.
- ✓ 지구/클럽이 지구 심의를 위해 제출한 입법안들을 검토한다.
- ✓ 지구대회에서 혹은 우편투표를 통해 심의 통과된 지구/클럽의 입법안들이 승인된 날짜로부터 45 일 이내에 RI 세계본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RI 웹 사이트(www.rotary.org)의 규정심의회 페이지에서 2010 규정심의회 관련 정보를 입수한다.

제 2 차 연도

- ✓ 지구/클럽이 지구 심의를 위해 제출한 입법안들을 검토한다.
- ✓ 지구대회에서 혹은 우편투표를 통해 심의 통과된 지구/클럽의 입법안들이 제출 마감일인 **2008 년 12 월 31 일까지** RI 세계본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한다.
- ✓ 지구/클럽이 제안한 입법안과 관련된 RI 서신들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귀하나 지구총재 또는 입법안 제안자가 즉시 답신하도록 한다. (입법안 수정안 세계본부 제출 마감일: 2009 년 3 월 31 일)
- ✓ RI 웹 사이트(www.rotary.org)의 규정심의회 페이지에서 2010 규정심의회 관련 정보를 입수한다.

제 3 차 연도

- ✓ 입법안 책자를 검토하고, 특히 귀 지구 또는 지구 클럽이 제안한 입법안들을 숙지한다(입법안 책자는 2009 년 9/10 월에 우송될 예정임).
- ✓ 존 연수회에 참석하여 규정심의회 참석을 위한 연수에 참가한다.
- ✓ 2010 규정심의회 등록 신청서를 검토한다.
- ✓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한다.
- ✓ 2010 규정심의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호텔 예약 및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 RI 에서 보내온 규정심의회 최근 정보와 여행 정보를 검토한다.
- ✓ RI 웹 사이트(www.rotary.org)의 규정심의회 페이지에서 2010 규정심의회 관련 최근 정보를 입수한다.
- ✓ 귀 지구 또는 지구 클럽이 제안한 입법안들에 대한 본안동의를 연습해본다.
- ✓ 귀국한 후 지구 클럽들에게 규정심의회 결과를 보고한다.
- ✓ 규정심의회 결의보고서와 개정된 정관 문서들을 검토한다.
- ✓ 다음 규정심의회를 위해 대비한다.